

부산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0가단3247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1. 6. 17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## 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4. 1. 체결한 매매계약을 102,361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02,36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제7쪽의 “51,639,000원”은 “69,639,000원”으로, “21,950,200원”은 “39,950,200원”으로, “120,361,000원”은 “102,361,000원”으로 각 정정한다).

### 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재덕

별지